" 동북아 중심도시 창원 "

창원특례시

마 산 회 원 구

수신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리 코코프라자 상가 앞 도로(호계리 790-15) 경사판 설치 행위자 귀하

(경유)

제목 **도로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(호계리 790-15 도로)**

1. 귀하께서는 내서읍 호계리 790-15 도로 일부를 무단으로 점용(경사판 설치)하고 있으며 이는 도로법 제61조(도로의 점용) 및 제75조(도로에 관한 금지행위)를 위반한 사항입니다.

2. 이에 「도로법」 제73조 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하오니 2024. 5. 10.(금)까지 이행하시기 바랍니다.

3. **만약, 위 기간내 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「도로법」 제73조 제4항 및 「행정대집행법」 제3조에 따른 행정대집행(직접 혹은 제3자 집행)을 실시하고 같은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대집행 비용을 징수하게 되오니,** 기간 내 반드시 원상회복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. 끝.

마산회원구청장

창원시 마산회원구청장인

주무관	임태준	안전건설팀장	박종혁	안전건설과장	전결 2024. 4. 18. 윤종석
협조자					
시행	안전건설과-8676	(2024. 4. 18.)		접수	

우 51323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삼호로 63,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 (양덕동) / http://www.changwon.go.kr

전화번호 055-230-4617 팩스번호 055-225-4926 / taejun2039@korea.kr / 대국민 공개